

1. 개정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9조의2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을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를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을”을 “테마파크업을”로,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테마파크업 허가·신고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를 “(테마파크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을 “테마파크업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을 “테마파크업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을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각각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

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테마파크업 신고증”으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테마파크업 허가·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을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조건부”를 “테마파크업 조건부”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 허

가증”을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테마파크업 허가·신고”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을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을 “테마파크시설 중”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0조제4항 본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를 “테마파크시설은 최

초”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를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제7조제1항 관련)”을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구분란 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유원시설업 내”를 “테마파크업 내”로, “유원시설업 허”를 “테마파크업 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구분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란 (4)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란 제3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구분란 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1)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란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구분란 나목 중 “일반 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구분란 다목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1)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1) 후단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란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1)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2)(나) 중 “유원시설업 내”를 “테마파크업 내”로, “유원시설업 허”를 “테마파크업 허”로 하고, 같은 호 (3)(가)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가) 1) 및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가) 4)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3) (나)1) 및 2)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나) 1)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나)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나.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별표 10의2의 제목 중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제39조의2 관련)”을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제39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을 “테마파크시설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전단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40조제1항 관련)”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제40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를 “안전성 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와”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같은 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 시설로서”로, 같은 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를 “테마파크시설 에”로, 같은 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1) 가)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내용	대표 테마파크시설	정의(테마파크시설의 유사기구명)
----	----	--------------	-------------------

별표 11 제1호나목1)가)의 종회전 고정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가) 횡회전 고정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가) 복합 회전 고정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가) 승강 고정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1) 다)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	---

별표 11 제1호나목1)다)의 기계 관람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다) 입체 관람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1) 라)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	--

별표 11 제1호나목1)라)의 일반놀이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라) 물놀이형의 내용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은”으로, 같은 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같은 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를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 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	---	-------	---

	는 테마파크 시설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물레이션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별표 11 제2호나목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	--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호의 구분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를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를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고, 같은 호 구분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종합유원시

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를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를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로 한다.

별표 12 제1호의 다.의 자격란 다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를 “테마파크시설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을 “테마파크시설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 관련)”을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내”를 “테마파크시설 내”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을 “테마파크시설 안”으로 하며, 같은 호 (6) 단서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10)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부

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를 “테마파크시설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을 “테마파크시설별”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목 (6)(가)부터 (다)까지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을 “테마파크시설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별표 24 제1호마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며, 같은 표 다.의 등록요건란 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1)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2)라)(2)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5)가)(3)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종류란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같은 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제12조의3제3호 및 제14조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u>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u> 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u>유원시설</u> 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 표 1의2와 같다.	제7조(<u>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u> 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 ----- <u>테마파크</u> <u>업</u> ----- -----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u>유원</u> <u>시설업의</u>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u>유원시설업</u> <u>허가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u>유원시설업의</u>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테마파</u> <u>크업의</u> ----- ----- <u>테마파크업</u> <u>허가신청서</u> ----- ----- ----- -----. ----- <u>테마파크업</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u>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 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u>테마파크시설</u>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 다. (생략)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
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
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
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
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
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8.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테마파크시설 ----

마. 테마파크시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

테마파크업 -----
----- 테마파크
업 허가증-----
----- 테마파크업 허가·신
고관리대장-----
-----.
⑤ 테마파크업 -----
-----.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테마파크
업-----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
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장 내에서의 신설·이전·
폐기

다. (생략)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
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2의2. (생략)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
· 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테마파크업-----

가. -----테
마파크시설-----

나. ----- 테마파크
시설-----

다. (현행과 같음)

② ----- 테마파크업---

-----.

1. -----테
마파크업-----

2. 2의2. (현행과 같음)

3. ----- 테
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테
마파크업-----
--

4. 안전관리자의 변경(<u>유원시설</u> 업만 해당한다)	4. ----- <u>테마파크업</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안전성검사 대상 <u>유기시설</u> 또는 <u>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u> 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u>유원시설업만</u> 해당한다)	6. ----- <u>테마파크시</u> <u>설</u> ----- ----- --- <u>테마파크업</u> -----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u>유</u> <u>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u> 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u>유기시설</u> 또는 <u>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u> 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u>유원시설업만</u> 해당한다)	7. ----- <u>테</u> <u>마파크시설로서</u> ----- ----- ----- <u>테마파크시</u> <u>설의</u> ----- ----- --(<u>테마파크업만</u> 해당한다)
제10조(<u>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u> <u>변경신고</u>) ① 법 제5조제3항 본 문에 따라 <u>유원시설업의</u> 변경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16호서식의 <u>유원시설업 허</u> <u>가사항</u>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제10조(<u>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u> <u>변경신고</u>) ① ----- ----- <u>테마파크업의</u> ----- ----- ----- ----- <u>테마파크업 허</u> <u>가사항</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
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
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
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서

3. ----- 테마파크시
설을 -----

--

4. ----- 테마파크시
설을 -----

--

② -----
테마파크업의 -----

-----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테
마파크시설을 -----

--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
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

3.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
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
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
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
명하는 서류

2의2. -----

테마파크시설을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 테마파크

업-----

-----.

② ----- 테마파

크업의 -----

----- 기타테마파

크업 -----

-----.

기타테마파크업-----

-----.

1. (현행과 같음)

2. 테마파크시설-----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u>유기시설</u> 또는 <u>유기</u> <u>기구를</u>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 ---- <u>테마파크시설을</u> ---- ----- -----
마. <u>유기시설</u> 또는 <u>유기기구</u>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마. <u>테마파크시설</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u>유원시</u> <u>설업 신고증</u> 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u>유원시설업</u> <u>허가·신고</u> 관리대장을 작성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 ----- ----- ----- <u>테마파</u> <u>크업 신고증</u> ----- ----- <u>테마파크업</u> <u>허가·신고</u> ----- -----.
⑤ <u>유원시설업</u> 신고증의 재발급 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⑤ <u>테마파크업</u> ----- -----.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 ----- -----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
· 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생략)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

1. -----테마파크시설-----

2. ----- 테마파크시설-----

--

3. (현행과 같음)

4. ----- 테마파크시설로서 -----

----- 테마파크시설의 -----

--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

----- 기타 -----
테마파크업 -----

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u>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u>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u>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u>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 6. (생 략)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제7조제1항에 따른 <u>유원시설업의</u>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u>유원시설업</u>만 해당한다) ② · ③ (생 략)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3. ----- <u>테마파크시설을</u> ----- ----- ----- ----- 4. ----- <u>테마파크시설을</u> ----- ----- ----- 5. · 6.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테마파크업의</u> ----- -----<u>테마파크업</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
--	---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
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
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테

마파크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① -----

테마파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테마파크업의 _____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
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
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

----- 테마파크업 조건부 -----
-----.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
----- 테마파크업-----

-----.

② -----

----- 테마파크업 -----

-----.

③ -----

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

----- 테마파크업의 -----

-- 테마파크업 허가증-----

-- 테마파크업 허가·신고 ---

---.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

----- 테마파크업자 -----

----- 테마파크시설을 -----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① -----

----- 테

마파크시설-----

-----.

② 테마파크업-----

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

----- 테

마파크시설-----

-----.

-- 테마파크시설-----

-----.

③ -----
--- 테마파크시설 중 -----

----- 테마파크시설는 -----
-----.

1. -----

----- 테마파크시설

2. ----- 테마파크시설
(테마파크시설-----

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
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
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
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
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
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
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
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
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
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
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
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

3. ----- 테
마파크시설

④ 기타테마파크업-----
-----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

----- 테마파크
시설을 -----

----- 테마파크시설는 최초

테마파크시설는 재확인검사---

⑤ -----

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 테마파크업 -----

-----.

⑥ -----
----- 테마파크시설 -----

-----.

⑦ ----- 테마파크시설 -----

-----.

1. -----
--- 테마파크시설 -----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

--.

2. -----

-- 테마파크시설-----

-----.

⑧·⑨ (현행과 같음)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 ① -----
----- 테마파크업-----

-----.

② -----

-----.

1. 테마파크 -----

2. 테마파크 -----
--
3. 테마파크 -----
4. ----- 테마파크 -----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

③ -----

-- 테마파크업-----

-----.

-- 테마파크업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테마파크업-----

--.

제41조의2(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테마파크업자-----
테마파크시설-----

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생략)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테마파크시설

3.·4. (현행과 같음)

5. ----- 테마파크시설-----

② 테마파크업자-----

-----.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4. (생략)

제69조(수수료) ① (생략)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제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테마파크업자-----
----.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

-----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
-----.

1. ----- 테마파크업-----

2. -----
테마파크업자-----

3. 4.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테마파크업-----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

③ (현행과 같음)

④ ----- 테마파크시설-----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② -----

-----.

1. ----- 테마파크업-----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 6. (생략) 7. 제40조에 따른 <u>유기시설</u> 또는 <u>유기기구</u>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u>유원시설업자</u>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 10. (생략) ③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7. ----- <u>테마파크시설</u> ----- ----- 8. ----- <u>테마파크업자</u>----- ----- 9.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